옥천군 공고 제2021-1178호

# 옥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8일

## 옥 천 군 수

**1. 조례명 : 옥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옥천군 사례결정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해촉 기준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사항 추가 및 수정(안 제2조)

○ 사례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조의2)

○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보완(안 제6조)

## 4. 개정근거

○ 「아동복지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 2

## 5. 의견제출

○ 「옥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주민복지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633, FAX : (043)731-9966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 6. 붙임

○ 옥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의견서 양식 1부.

옥천군조례 제 호

# 옥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10명”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위촉직 위원”을 각각 “위촉위원”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옥천교육지원청 또는 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아동복지법”을 “「아동복지법」”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옥천군 사례결정위원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옥천군 사례결정위원회(이하 “사례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1. 제3조제1호부터 제5호 및 제8호에 관한 사항

2. 아동학대 사례판단 및 피해아동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

②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위원회에”를 “심의위원회에”로, “위원회는”을 “심의위원회는”으로 한다.

제6조제5호 중 “회의에 참석하여 업무상”을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제1항 중 “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위원회”를 각각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9조 중 “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0조 중 “위원회는”을 “심의위원회는”으로, “위원회에”를 “심의위원회에”로 한다.

제12조 중 “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옥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 ---------- ---------- ---------- ----------. |
| 제2조(구성) ① 옥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제2조(구성) ① ---------- ---------- “심의위원회”---------- -------- 15명 ---------- ---------- -- 위촉위원---------- ---------- ----------.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③ 당연직 위원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아동복지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③ ---------- ---------- ---------- 위촉위원---------- ---------- ----------. ---------- 제6호---------- ---------- -----. |

| | |
|---|---|
| 1. 옥천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거나 하였던 사람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br>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br>나. 옥천교육지원청 또는 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
|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거나 하였던 사람 |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 <신 설> | 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
| <신 설> |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

| | |
|---|---|
| |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
| <신 설> |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 4. (생 략) | 7. (현행 제4호와 같음)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제3조(기능) 심의위원회----------. |
| 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1. 「아동복지법」----------<br>---------- |
| 2. ~ 8. (생 략) | 2. ~ 8. (현행과 같음) |
| <신 설> | 제3조의2(옥천군 사례결정위원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옥천군 사례결정위원회(이하 “사례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

| | |
|---|---|
| | 1. 제3조제1호부터 제5호 및 제8호에 관한 사항<br>2. 아동학대 사례판단 및 피해아동 보호계획에 관한 사항<br>②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다. |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br>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br><br>1. ~ 4. (생 략)<br>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br>③ (생 략) |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br>① ---------- 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br>1. ~ 4. (현행과 같음)<br>② ---------- 심의위원회에 ---------- 심의위원회는 ----------. ----------.<br>③ (현행과 같음) |
|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6조(위원의 해촉) ----------. |

| |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4. 삭 제 | |
| 5. 회의에 참석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신 설> | 5.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br>6.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 심의위원회----------. |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제8조(회의의 소집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 제8조(회의의 소집 등) ① 심의위원회----------. |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심의위원회----------.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 제9조(간사) 심의위원회----------. |
| 제10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 제10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심의위원회는 ---------- |

| | |
|---|---|
| 는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 ---------- ---------- -------- 심의위원회에 ---------- ---------- ---------- --. |
|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12조(운영세칙) ---------- ---------- ---------- 심의위원회---------- ----------. |

#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옥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고 |
|---|---|---|
| | | |